## 비조치의견서 (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요청대상 □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감독규정상 IT 전문 자회사에 지주의 전산 행위 관련 관리·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「금융지주회사법」제4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에는 전산시스템 관련 관리·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동법
□「금융지주회사법」제4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
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 회사에게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○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위탁에 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□ 다만,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가 그 에게 전산시스템 관련 관리·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비조를 사항을 수용함  ○ 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47조 제1항 등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쟁력 위하여 업무위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 ○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라 은행 등 타 금융 경우 전산 관련 업무 등의 위탁이 가능함

- **\*\* 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